

전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37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379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29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9. 15.

판결선고 2021. 10. 2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29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0. 5.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5. 19. 접수 제21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